

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1. 3. 5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1. 3. 5(의안 제5호)
- 라. 심사일자 : 제53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(2001. 3. 23)

2. 제안이유

- 가.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대지안의 조경기준중 일부를 폐지함(안 제20조2항)
- 나.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을 정함(안 제24조)
- 다.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율을 정함(안 제26조)

4. 법적 근거

- 가. 건축법 제47조제2호 및 시행령 제78조, 건축법 제48조제2호 및 시행령 제78조

5.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

- . 동 개정안은 2000년 12월 27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지역별로 세분화한 것으로
- . 상위법 개정에 맞추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